

臺灣 商標法施行規則 일부 改正 商標區分 103類를 95類로 縮小 4類 추가등

臺灣 정부는 지난해 10월 21 日자로 商標法 施行規則 일부를 改正, 施行하고 있다. 臺灣의 改正 商標法施行規則을 보면 商標區分 103類를 95類로 縮소하고, 서비스분류에 4분류(제8류: 商品의 전적, 입찰의 代행, 상업정보의 제공 및 公證, 제9류: 촬영 및 인쇄, 제10류: 미용, 제11류: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처리)가 추가됐다.

아울러 경과조치로써 公告決定되어 있지 않은 商標登錄出願과 相關한 指定商品에 속하는 類別이 改正후의 것과 동일치 않은 경우, 改正후의 類別에 의해 公告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商標法 施行規則 제28조 - 자신의 商標와 동일 또는 타인의 商標에 대하여 商標法 제37조 제1항 제6호를 理由로 이의신청 또는 無效심판을 請求한 것은 다음 사항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① 타인의 商標가 公중을 기만할 兪려가 있다는 것을 주장함은 그 商標가 外國에서 登錄을 받은 商標權者로서 있을것.

② 他人의 商標가 公중으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킬 兪려가

있다는 것을 주장함에는, 아직 外國에서 登錄을 받고있지 않

은 商標의 先使用者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뉴질랜드 서어비스마크制度 導入

뉴질랜드는 최근 商標法을 改正, 오는 5월 1일부터 서어비스마크의 登錄을 許與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特許廳은 많은 서어비스마크의 出願을 예상하여 尙급하여 서어비스마크 出願을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施行日 이전에 尙당겨 수리된 서어비스마크 出願은 오는 5월 1일이 出願日이 된다.

서어비스 分類는 國際分類(第35類부터 42類까지)에 의하여 出願수속은 商標登錄出願과 같다.

홍콩 商標法 施行規則 改正

홍콩은 지난해 11월 1日 商標登錄出願의 수속을 간소화했다.

종래에는 出願書·위임장·진술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새로 改正된 出願書와 진술서만 제출하면 香港대리인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情報(出願商標가 香港 또는 기타의 國家에서 指定商品에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또는 기타의 國家에서 指定商品에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또는 出願商標와 同一의 商標가 登錄되어있는 國家가 있으면 그 國名)는 香港 代理人에게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위임장에 대해서는 代理人을 변경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출이 필요없다. 이는 英國의 프랙티스와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한편 과거 香港에서는 소위 局通知의 종류에 의해 회답기한이 달랐으나 이 점도 改正되어 3개월로 통일되었다. 또 그 기한도 1年을 한도로 2번이상 연장할 수 있다.

WIPO 猶豫期間 新設

WIPO는 發明人 本인이 發表한 논문에서 公開한 發明등에 限하여 6개월에서 1年間 일정기간동안 出願할 權利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猶豫期間制度를 新設했다. <○>